

보도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5. 4. 2(수) 17:40

어업인 안정적 은퇴·후계 양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 목포해수청 찾아가는 경영이양 직불제 설명회 개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2일 완도군 서넙도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수산 공익 직불제 팀(이하 직불제팀)과 함께 찾아가는 경영 이양 직불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만 80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21.3월 신규 도입됐다.

경영이양직불금은 고령어업인에게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최소 연 120만 원부터 최대 연 1,440만 원 정액 지원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을 어촌계원들에게 안내하고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영미 (061-280-1670)
		담당	주무관	정경훈 (061-280-1740)
		담당	주무관	유서준 (061-280-1785)

참고 1

경영이양직불제 개요

□ (사업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기여

□ (사업대상) 신청일을 포함해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계원 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만 80세 미만 포함까지 확대('23.4.1~'26.12.31 한시 적용)

□ (지급요건) 소속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 영구 탈퇴

○ 소득증명을 위한 선정 신청년도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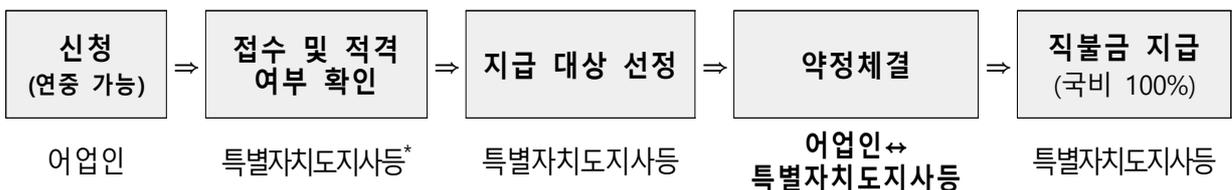
□ (지급기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구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
지급액	연 120만원(정액) (월 10만원)	연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연 1,440만원(정액) (월 120만원)

□ (지급방식, 기간) 연간 지급액을 월 단위로 나눠 약정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최장 10년간*

* 만 65세 ~ 만 75세: 10년간(동일) / 만 76세 ~ 만 79세: 9~6년간(연령별 차감)

□ (사업절차) 지급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약정체결 후 직불금(국비 100%) 지급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